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완료, 6개월 유예 후 11월 9일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현주)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되었다.

* 전문가 단체(9개) 대상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자문('25.7.)

** 성인 700명 대상 제5기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인식도 조사('25.7.~8.)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시)

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 를 마련하였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고시)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하여,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현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자료실→지침/교육자료

-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주요내용
2.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방법 표준안

<별첨> 주류용기·주류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가이드라인

담당 부서 <총괄>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2820)
		담당자	서기관	김경찬 (044-202-2821)
담당 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위해예방본부 음주폐해예방사업단	책임자	단 장	이현지 (02-3781-3578)
		담당자	단 원	조아진 (02-3781-2283)



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표시한 다음,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글자 및 그림의 크기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글자 크기	그림 크기
300ml 이하	8pt 이상	8mm×8mm 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	10pt 이상	10mm×10mm 이상
500ml 초과 1,000ml 이하	14pt 이상	12mm×12mm 이상
1,000ml 초과	16pt 이상	15mm×15mm 이상

비고: 1. 전면 코팅용기(캔류, 코팅 병 등)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

2. 용량이 500ml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색상

가. 경고문구

1)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補色)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2) 경고문구: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나. 경고그림

1)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검은색

2)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흰색

3)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빨간색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고시(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제2조 관련)

구분	경고문구	경고그림
건강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음주운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주류용기 : 캔>



<주류용기 : 맥주병>



<주류용기 : 소주병>



<주류용기 : 페트>